

#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8,109,940	15,243,298
일반회계	419,733,663	12,592,010
특별회계	88,376,277	2,651,288
기타특별회계	88,376,277	2,651,2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468,654	584,060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57,583,098	1,727,49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76,991	14,31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199	12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226,164	6,785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927,615	147,828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689,556	170,687

제 2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19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869,03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